

의안 번호	2587	【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. 7. 2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7. 7.(화)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6. 7. 15.(수)

2. 제안이유

- 지역치안협의회의 관계기관 협조 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를 명문화하고, 예산 지원의 범위·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기준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관계기관 등의 협조 규정 신설(안 제11조)
-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의견 제시,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
- 나. 재정적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적 명시(안 제12조)
- 재정지원에 대해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된 경비로 구체화하여 규정
- 다.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(안 제13조)
-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의무 규정 신설

4. 근거법규 : 해당없음

5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 개선을 목적

으로 설치·운영되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관계기관 협조 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를 명문화하고, 예산 지원의 범위·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기준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규정 신설,
- 안 제12조 재정지원에 대해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된 경비로 구체화하여 규정 마련
- 안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 등임.

○ 전반적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한 바,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따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를 없애고, 지원 근거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※ 2025년의 지원 내용

- 지원 예산액: 20,000천원
- 주요 지원내용
 - 빈집 범죄예방을 위한 출입금지 펜스, 슬라안심등, 로고젝터 설치
 - 아동학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등,
- 집행과정
 - 중부경찰서에서 구입·설치 등 실무과정을 진행
 - 지출은 중구에서 수행